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6
------------------	-----

제출일자 : 2011.05.19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상속 및 법인합병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
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 합산 기준
(안 제18조제2항)

-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21조의1)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다. 입법예고 : 2011.4.11. ~ 2011.5.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군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u>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 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신 설></u></p>	<p><u>제18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u> ①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 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

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
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신 설>

제2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
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
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세와 군세의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
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
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 ④ (생략)